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39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임미애·주철현·복기왕

어기구 · 김종민 · 박정현

윤준병 · 임호선 · 박민규

이원택 • 이병진 • 송옥주

서삼석 · 김성화 · 박지원

장종태 · 문대림 의원

(1791)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반도의 사육환경에 적응된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축 유전자원이며, 국내에서 토종 유전자원 특성에 기반을 두고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가축임.

한우는 농산부산물 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한우산업은 식품 이상의 지역 공동체의 다원적 특화기능을 하고 있어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

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 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가치 실현, 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 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 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 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 사기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 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시 우 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 타.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 파.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과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대 세대로 전달 되 도록 국가 단위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25조).
- 하. 한우의 품종내 아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보존 가치가 큰 칡소, 흑우 등 희소성 있는 유전집단에 대해서는, 한우 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해, 보존 특구 등의 지정 운영 방안을 마련함 (안 제26조).

법률 제 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 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소로, 한우 어미소 에서 태어난 소를 말한다.
 -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사육·가공·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종합

적인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한우농가는 한우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사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 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 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 3.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 4. 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 5. 한우가격의 안정화 및 이용 촉진 방안
 - 6. 한우 유전자 보존ㆍ육종ㆍ개량ㆍ증식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

- 우 생산에 관한 사항
- 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 8.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 9.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0.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 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다.
 - 1. 한우의 품종육성

- 2. 유전체 분석에 의한 종모우 선발과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 3.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 4.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및 실용화 방안
- 5.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 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한우의 생산·사육·유통·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워
-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 2.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3. 저메탄 등 사료 지원
 - 4. 한우의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 5.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 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 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지원 및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 2. 한우의 사육 방법
 -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송아지의 가격이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 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 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참여 자격
 - 2. 참여기간 · 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 ·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 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대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 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 제16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 4.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 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 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8조(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가공· 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체 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

- 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통과정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소비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 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 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 3.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 4.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 제21조(도축·가공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 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 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야 한다.
- 제23조(수출기반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 3.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 5.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4조(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 ① 기업이 한우 생산업 에 진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자와 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한우 유전자원 보호 • 육성

제25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① 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우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대 세대로 전달되도록 국가

- 단위의 한우 유전자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 유전자원 활용을 위하여 유전형질이 확인된 한우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체계적으로 보존한다.
- ③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 및 연구·개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④ 한우의 정액, 수정란, 혈액, DNA 등의 국외반출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칡소, 흑우 보호특구 지정) ① 국가는 한우의 품종내 아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칡소,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집단에 대해서는 한우 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종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칡소와 흑우 등에 대해서는 각각 보호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양호한 사육환경 확보와 개체수를 증대하기 위한 생산자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한우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학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인 시책 수립에 반영한다.
- 제27조(한우의 세계화) ①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한우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 ② "한우의 세계화"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것을 말한다.

- 1. 한우고기 및 한우가공식품의 수출
- 2. 가죽, 뿔, 지방 등 한우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상품 수출
- 3. 한우를 이용한 한식의 보급
- 4. 방한 외국인에 대한 한우고기 및 한우 상품의 홍보
- 5. 유네스코, FAO 등 국제기구에 공식적인 한우의 유전 및 문화적 가치 등 등재
- 제28조(한우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① 국가는 한우가 지 닌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 다.
 - ② 제1항에서 말한 "필요한 시책"이란 한우의 역사적 사료(史料) 발굴, 한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인식, 존중, 계승, 확산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 ③ 국가는 국립농업박물관 등 국가가 운영하는 역사 문화 관장 기관에 한우의 역사 문화 관련 전문인력, 전용공간 확보를 할 수 있다.
- 제29조(한우의날) ① 한우산업의 진흥과 한우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한우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한우의 날(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벌칙)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우의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 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